

목포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의안 번호	148
----------	-----

□ 위원회 회부일 : 2003. 12. 2.

□ 제안이유

- 기금운용위원중 민간위원 위촉대상을 금융전문가로 명시하여 기금운용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.
- 조례에 누락되어 있는 기금총괄운영관을 기획관광국장으로 명시하여 지정하고자 함.
- 조례에 누락되어 있는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, 의회제출 및 승인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.
- 조례에 누락되어 있는 조례의 형식적 요건인 시행규칙에 관한 조항을 신설코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민간 위촉위원을 “금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”로 함(안 제6조 제3항 제2호)
- 시장은 기획관광국장을 기금을 운영하는 총괄기금운영관으로 지정함(안 제8조 제1항)
-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함(안 제9조 제1항 내지 제3항)
-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(안 제10조, 안 제30조, 안 제10조)

□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목포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등 기금운용위원중 민간 위촉대상을 금융전문가로 위촉토록 명시하고 조례에 누락된 기금운용총괄운영관, 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승인관련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
-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 및 의회제출 승인 사항은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사항으로 조례에 누락된 사항을 보완한 것이며 개정안의 3개 조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공히 규칙제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음.